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기 획 경 제 위 원 회



서울산업진흥원

정 관 변 경 보 고

2020. 9



집단 서울산업진흥원

# 서울산업진흥원 정관변경 보고

## □ 개 요

○ 관련근거: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55조의3

제55조의3(조례상보고 등) 시장 및 교육감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의회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 사항에 대해 보고의 건으로 보고시기와 가장 가까운 회기에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, 보고시기가 폐회 중일 때는 의장과 상임위원장에게 우선 보고한 후 다음 회기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여 보고한다.

## □ 서울산업진흥원 정관변경 보고

- 변경 사유
  - 「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」일부 개정 및 서울시 투자·출연기관 노동이사제 세부운영지침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
- 변경 내용
  - 노동이사 규모 명확화 (제8조)

#### 혀 행

제8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 재단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.

- 1. 이사장 및 대표이사 1명
- 2. 삭제
- 3. 상임이사 2명 이내
- 4. 〈신 설〉
- 4. 이사 15명 이내(이사장 및 대표이사, 상임이사를 포함한다)
- 5. 감사 2명
- 6. 이사장은 대표이사가 겸직할 수 있다.

#### 개 정 (안)

제8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 재단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.

- 1. 이사장 및 대표이사 1명
- 2. 삭제
- 3. 상임이사 2명 이내
- 4. 노동이사 2명 이내
- 5. 이사 15명 이내(이사장 및 대표이사, 상임이사, 노동이사를 포함한다)
- 6. 감사 2명
- 7. 이사장은 대표이사가 겸직할 수 있다.

- 명칭 변경: 노동자이사 → 노동이사 (제9조 및 제10조)

### 혀 행

### 제9조(임원의 임면) ① 생략

②이사는 선임직이사와 당연직이사로 구분하며, 선임직이사에는 상임이사 및 <u>노동자이사</u>를 포함하고 당연직이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
1.~3. 생략

③~9 생략

제10조(임원의 임기) ①임원의 임기는 3 년으로 하며, 3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. 이 경우 임원의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,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 다만, 노동자이사는 임기종료 등으로 결원 발생 시 노동자투표 등 선출절차를 거쳐새로 선출하여야 한다.

②~④ 생략

### 개 정 (안)

### 제9조(임원의 임면) ① 현행과 동일

②이사는 선임직이사와 당연직이사로 구분하며, 선임직이사에는 상임이사 및 <u>노동이사</u>를 포함하고 당연직이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
1.~3. 현행과 동일

③~ (9) 현행과 동일

제10조(임원의 임기) ①임원의 임기는 3 년으로 하며, 3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. 이 경우 임원의 임명권자는 경영성 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 가결과,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 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 다만, 노동이사는 임기종료 등으로 결원 발생 시 노동자투표 등 선출절차를 거쳐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.

②~④ 현행과 동일

## - 노동이사 권한 확대 (제25조)

▶ 기존의 이사회 참여 및 안건 심의·의결 외 이사회 안건 제출권 및 이사회 관련 정보열람권 추가

### 현 행

**제25조(이사회의 소집)** ①~④ 생략 ⑤ 〈신 설〉

⑤제9조에 의해 이사장으로 임명되는 비상근이사에게 업무수행활동비 또는 실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, 이에 대한 지급기준은 여비 및 회의수당규정에 의한다.

## 개 정 (안)

제25조(이사회의 소집) ①~④ 현행과 동일 ⑤노동이사는 이사회 소집 전 안건을 제 출할 수 있으며 이사회 관련 정보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.

⑥제9조에 의해 이사장으로 임명되는 비 상근이사에게 업무수행활동비 또는 실비 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, 이에 대한 지급기준은 여비 및 회의수당규정 에 의한다.

관련 근거

-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(서울특별시조례 제7667호, 공포일 2020.7.16.)
-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동이사제 세부운영지침 개정 알림(공기업담당관-8948, 2020.8.22.)

## □ 향후 추진계획

- 이사회 의결: '20. 12월
- 서울시장 승인: '21. 1월
-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허가: '21. 1월

## 서울산업진흥원 정관변경(안)

서울산업진흥원 정관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.

## 제 2 장 임원 및 직원

제8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 재단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.

- 1. 이사장 및 대표이사 1명
- 2. 삭제
- 3. 상임이사 2명 이내
- 4. 노동이사 2명 이내
- 5. 이사 15명 이내(이사장 및 대표이사, 상임이사, 노동이사를 포함한다)
- 6. 감사 2명
- 7. 이사장은 대표이사가 겸직할 수 있다.

### 제9조(임원의 임면) ①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.

- ②이사는 선임직이사와 당연직이사로 구분하며, 선임직이사에는 상임이사 및 <u>노동이사</u>를 포함하고 당연직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  - 1. 서울특별시 경제일자리기획관
- 2. 서울특별시 재정기획관
- 3.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
- ③감사 2명중 1명은 서울특별시 경제정책과장을 당연직으로 한다.
- ④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되, 대표이사·선임직감사·선임직이사는 시장이 임명한다. 단, 조례 또는 정관으로 당연히 임명되는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의 공모 및 추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.
- ⑤대표이사가 임명된 경우, 시장은 대표이사와 대표이사의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경영목표와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성과계약을 체결하고,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에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인 경영목표에 관하여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- ⑥삭제
- (7)삭제
- ⑧시장은 대표이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임기 중 해임할 수 있다.
- ⑨선임직임원이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단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사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해임을 요구하여야 한다.
- 제10조(임원의 임기) 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3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. 이 경우 임원의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,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 다만, <u>노동이사</u>는 임기종료 등으로 결원 발생 시 노동자투표 등 선출절차를 거쳐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.
- ②제1항에 의해 임원을 연임할 경우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비상임이사 및 비상임감사를 연임시키려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.
- ③당연직이사와 당연직감사의 임기는 그 직을 상실한 때 만료되며, 후임자가 승계한다.

④임기 중에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 그 후임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새로이 기산한다.

제25조(이사회의 소집)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여 이사장이 소집한다.

- ②정기이사회는 연2회 소집한다.
- ③임시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과반수가 요청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.
- ④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에 그 목적을 명시하여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, 예산(안) 및 주요사업계획(안)에 대해서는 이사회 개최 15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이사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.
- ⑤노동이사는 이사회 소집 전 안건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사회 관련 정보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⑥제9조에 의해 이사장으로 임명되는 비상근이사에게 업무수행활동비 또는 실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, 이에 대한 지급기준은 여비 및 회의수당규정에 의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### 혀 행

## 제8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 재단에는 다음 각 제8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 재단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.

- 1. 이사장 및 대표이사 1명
- 2. 삭제
- 3. 상임이사 2명 이내
- 4. 〈신 설〉
- 임이사를 포함한다)
- 5. 감사 2명
- 6. 이사장은 대표이사가 겸직할 수 있다.

#### 제9조(임원의 임명) ① 생략

- ②이사는 선임직이사와 당연직이사로 구분하 ②이사는 선임직이사와 당연직이사로 구분하 하는 자로 한다.
- 1.~3. 생략
- ③~⑨ 생략
- 제10조(임원의 임기) 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제10조(임원의 임기) 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,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 다. 다만, 노동자이사는 임기종료 등으로 결 원 발생 시 노동자투표 등 선출절차를 거쳐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.
- ② ~ ④ 생략

### 제25조(이사회의 소집) ①~④ 생략

⑤ 〈신 설〉

⑤제9조에 의해 이사장으로 임명되는 비상근이 ⑥제9조에 의해 이사장으로 임명되는 비상근이 여비 및 회의수당규정에 의한다.

## 개 정 (안)

- 호의 임원을 둔다.
  - 1. 이사장 및 대표이사 1명
  - 2. 삭제
  - 3. 상임이사 2명 이내
  - 4. 노동이사 2명 이내
- 4. 이사 15명 이내(이사장 및 대표이사, 상 5. 이사 15명 이내(이사장 및 대표이사, 상 임이사, 노동이사를 포함한다)
  - 6. 감사 2명
  - 7. 이사장은 대표이사가 겸직할 수 있다.

### 제9조(임원의 임면) ① 현행과 동일

- 며, 선임직이사에는 상임이사 및 노동자이사 며, 선임직이사에는 상임이사 및 노동이사를 를 포함하고 당연직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 포함하고 당연직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 는 자로 한다.
  - 1.~3. 현행과 동일
  - ③~ ⑨ 현행과 동일
- 하며, 3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. 이 경우 임 하며, 3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. 이 경우 임 원의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원의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.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 다. 다만, <u>노동이사</u>는 임기종료 등으로 결원 발생 시 노동자투표 등 선출절차를 거쳐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.
  - ② ~ ④ 현행과 동일

### 제25조(이사회의 소집) ①~④ 현행과 동일

- ⑤노동이사는 이사회 소집 전 안건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사회 관련 정보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.
- 사에게 업무수행활동비 또는 실비를 월정액으 사에게 업무수행활동비 또는 실비를 월정액으 로 지급할 수 있으며, 이에 대한 지급기준은 로 지급할 수 있으며, 이에 대한 지급기준은 여비 및 회의수당규정에 의한다.